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45,198,610	10,355,958
일반회계	326,589,966	9,797,699
특별회계	18,608,644	558,259
기타특별회계	18,608,644	558,259
재정비축진특별회계	568,060	17,04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86,734	59,60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78,870	20,36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22,745	42,682
주차장특별회계	11,744,512	352,335
기반시설특별회계	7,723	232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200,000	66,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3,283,01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이용할 수 있다.